

2020년 수원 MICE 유치·개최 지원사업 공고

수원컨벤션센터는 수원시의 MICE 산업 발전과 경기 남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 19로 인한 MICE 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「2020년 수원 MICE 유치·개최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4. 29.

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

1.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

- ① '코로나19' 극복 및 수원 MICE 업계의 성장을 위한 유치·개최 지원
- ② MICE 지원금 지원을 통해 수원 MICE 유치·개최 확대 및 도시 경쟁력 확보

2. 지원대상 및 내용

○ 지원대상

- 행사 규모 및 **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및 우선지원** (의료, 보건, 환경, 첨단 산업 등 **수원 특화산업**)
-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거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행사의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지원 가능
- 지원제외 대상 또한 내부방침에 따라 결정 및 안내

구분	지원대상
국제회의	1. ICCA, UIA의 기준에 부합하는 회의로서 외국인 50명 이상의 국제적 성격을 갖고있는 회의 (ICCA, UIA 기준: 불입 참조) 2.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는 회의 (법률 기준: 불입 참조) 3. 중소기업의 국제회의로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,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혹은 외국인 참가자 100명 이상, 1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
기업회의·인센티브	○ 기업이 주최·주관하는 회의로 외국인 50명 이상,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혹은 외국인 100명 이상, 1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
전시회	수원 산업 발전에 기여 하는 산업전시회 중 회의실을 사용하는 부대행사(800m ²)를 개최하며, 3일 이상 진행되는 전시회
이벤트	○ 외국인 50명 이상, 2일 이상 진행되는 이벤트 혹은 외국인 100명 이상, 1일 이상 진행되는 이벤트 ※ 축제 및 종교단체 회의행사, 수련회 등은 제외
*미팅테크놀로지 적용 회의	○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회의로 미팅테크놀로지 기술을 2개 이상 활용하여 1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(외국인 참가자 기준 없음) ※ 국제회의 혹은 기업회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※ 미팅테크놀로지 정의 효율적 행사 운영과 참가자의 참가 목적 달성을 위해 행사 전반에 활용되는 기술 적용 가능 범위 참고: 불입 참조
*수원특화 국내회의	○ 수원특화산업 관련 국내회의 중 학·협회가 주최하는 250명 미만의 인원이 1일 이상 참여하는 회의 (외국인 참가자 기준 없음) ※ 수원특화산업 : 환경, 의료·보건, 첨단·IT

○ 지원내용

- 지원금 지원 가능 항목

- ① 전시회와 미팅테크놀로지 적용 회의, 수원특화 국내회의에 경우 개최 단계에 한해 지원
- ② 단계별로 각 1회씩 총 3회까지 지원 가능

단계	유치지원	해외 홍보 지원	개최지원
구분	· 수원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MICE 행사의 유치	· 수원으로 유치 확정된 MICE 행사의 외국인 참가자 증대를 위한 '해외' 홍보활동	· 수원에서 개최되는 당해 연도 MICE 행사
지원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유치제안서/PT/홍보물 (인쇄, 배너, 영상물 등), 기념품 제작 ② 수원시/수원컨벤션뷰로 유치지지 서한 또는 동영상 메시지 ③ 본부단체 관계자 사전 방한 (수원 답사) 숙박, 차량, 관광지 입장료 ④ Korea 수원 Night 연회비, 홍보부스 설치 운영비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행사관련 홍보물(인쇄, 배너, 영상물 등), 기념품 제작 ② 해외공식 연회비 및 공연 - ex) 수원시 주최 연회 등 ③ 홍보부스 설치·운영비 ※ 직전차 대회까지 1회 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공식 연회비 - ex) 환영리셉션 갈라 디너 등 ② 수원시 내 관광시설 입장료 ③ 관내 MICE 시설 및 관광지내 팀빌딩 프로그램 ④ 해외 초청자 숙박비 (초청 연사 혹은 바이어) ⑤ 홍보물 제작비 및 행사장 조성비 ⑥ 미팅테크놀로지 구축 및 운영비 ⑦ 임대료 일부 지원 (미팅테크놀로지 적용 회의 한정)

3. 지원신청 방법

- ① 신청기간 : 2020. 4. 29. ~ **예산 소진 시까지**
 - 정기접수 : 2020. 4. 29. ~ 5. 15.
 - 수시접수 : 유치/홍보/개최 최소 1개월 전 (※ 정기접수 기간 중 예산 소진 시 불가)
- ② 결과통보 : 내부심사 후 공문을 통한 확정결과 통보
- ③ 문 의 처 : 김수연 주임 031-303-6058
- ④ 신청방법 : 우편, 이메일 제출
 - ※ 제출기한 : 이메일(4월 15일 **오후 6시까지**), 우편은 제출 마감일 **15일 소인까지 유효**

이 메 일	ellykim@suwoncvb.or.kr (김수연 주임)
우 편	(16514)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140(하동), 수원컨벤션센터 지하 1층 (수원컨벤션센터 운영사무실)

○ 신청주체

- ① 국내 주최·주관단체(학협회, 법인, 기업 등)
- ②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기관(PCO, PEO, MICE시설, 여행사 등)
- ③ 해외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거나 공동주최(주관)하는 국내기관
- ※ 위임받은 기관은 주최기관의 위임장(공문형태) 제출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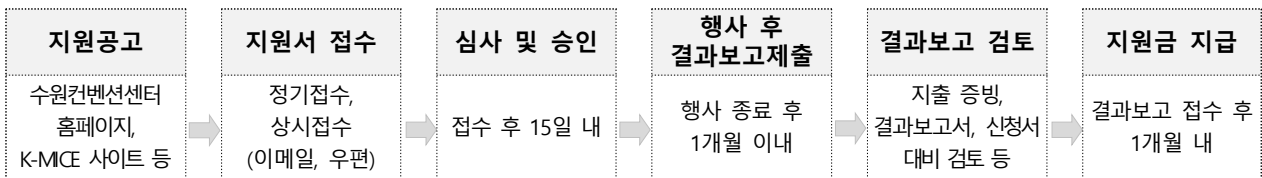
4. 지급조건 및 방식

○ 지급조건

- ① 홍보물(현수막, 프로그램북), 기념품 등에 수원컨벤션센터 후원 명기 또는 로고 삽입
- ② 주최기관 및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진행 시 협조

국제회의, 전시회, 이벤트	기업회의/인센티브단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집행, 후지급 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금액 내에서 주관단체가 先집행, 결과보고 접수·검토 後 지급 ☞ 불가피한 경우 주최기관 거래처에 재단이 직접 결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금액 내에서 뷰로가 직접 집행, 주관단체는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최기관 거래처에 재단이 직접 결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금액 내에서 재단이 직접 집행, 주관단체는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 제출 → 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

○ 지원절차



○ 제출서류

지원 신청 시	결과보고 시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주최단체 명의 공문 1부(유치, 홍보, 개최지원 공통) ② 유치/홍보/개최지원 신청서 1부(제공 양식)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④ 대행기관 대행증빙서류(위임장 또는 계약서, 주관사 공문 등) ⑤ 특별지원의 추가서류 별도 협의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주최단체 명의 공문 1부(유치, 홍보, 개최지원 공통) ② 유치/홍보/개최 결과보고서 1부(제공 양식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출증빙서류, 참가자 리스트 등 ③ 후원 명기 및 로고삽입 증빙 원본 1부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p><참가자 리스트 작성 시 주의사항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명, 국적, 소속, 이메일의 4가지 항목 필수 ※ 4가지 항목 완전 기입자가 전체 참가자 수 70% 이상 충족해야 함 - 중복명단, 이메일 무효처리 </div>

○ 지원불가 및 취소

- ① 수원컨벤션센터의 행·재정적 지원 후 개최지를 변경할 경우 지원금 2배의 위약금 청구 및 3년간 지원신청 제한
- ② 신청 연도에 승인된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
- ③ 증빙, 결과보고서 자료 미비 또는 허위제출 시 지원 취소
- ④ 행사결과가 당 초 계획 및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, 또는 최종 참가자가 당 초 신청 시 보다 감소한 경우 지원금 감액 또는 취소

구 분	지원금 감액 및 취소 기준		비고
	감액(감소율 비례 감액)	취소(전액 취소)	
국제회의, 기업회의/ 인선티브단체 전시회 이벤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체 참가자 20% 이상 감소 시 ◦ 외국인 참가자 15% 이상 감소 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체 참가자 30% 이상 감소 시 ◦ 외국인 참가자 30% 이상 감소 시 	감소기준에 따라 감액

문의처

-MICE 유치지원 홍주석 팀장 031-303-6052 francis@suwoncvb.or.kr
 -수원 MICE얼라이언스 심지원 대리 031-303-6055 jwshim@suwoncvb.or.kr
 -MICE 유치·개최지원 김수연 주임 031-303-6058 ellykim@suwoncvb.or.kr

- 붙임 1. 미팅테크놀로지 적용 가능 범위 1부.
 2. 국제회의 기준표(ICCA, UIA,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) 1부. 끝.

붙임 1 **미팅테크놀로지 적용 가능 범위**

연번	내용	비고
1	증강현실(AR)	
2	가상현실(VR)	
3	홀로그램 (Hologram)	
4	RFID (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)	
5	위치기반서비스(LBS) / GPS	
6	비콘 (Beacon)	
7	모바일 앱 (Mobile Apps)	
8	안면인식 기술 (Facial Recognition)	
9	스마트 디스플레이 (Smart Display)	
10	안내로봇 (Guiding Robot)	
11	드론 (Drone)	
12	화상회의	*전체 회의의 30% 이상 활용

※ 이 외 사항은 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요

붙임 2

국제회의 기준표(ICCA, UIA,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)

기관명	기 준
UIA 1)	A형 국제기구가 개최/후원하는 회의 참가자 수 50명 이상
	B형 국제기구의 지부 또는 국내단체, 국가기관에서 개최/후원하는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회의로,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회의 ① 전체 참가자 수 300명 이상 ② 참가자 중 외국인 40% 이상 ③ 참가국 수 5개국 이상 ④ 회의기간 3일 이상
	C형 국제기구의 지부 또는 국내단체, 국가기관에서 개최/후원하는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회의로,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회의 ① 전체 참가자 수 250명 이상 ② 참가자 중 외국인 40% 이상 ③ 참가국 수 5개국 이상 ④ 회의기간 2일 이상
ICCA 2)	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회의 ① 협회에서 주최 ② 정기적으로 개최 ③ 참가자 50명 이상 ④ 3개국 이상 순환하는 회의
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법률 준용	1.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·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☞ 5개국 이상, 300명 이상(외국인 100명 이상),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2.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·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☞ 외국인 150명 이상,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

1) UIA: 국제협회연합(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)

2) ICCA: 국제컨벤션협회(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)